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85호
- 나. 제출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과 간접 흡연 정의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간접흡연”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 (안 제2조제2호)
- 나.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택시승차대 등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상지 추가 (안 제5조)
-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재정비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4.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택시승차대와 지하철역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간접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마을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설하였습니다.

-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지정 현황 -

구 분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마을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지자체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중구	강남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금천구	10개 기지정	192개소 미지정	3개소 중 1개소 지정 (금연거리에 포함)

※ 관내 조례에는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市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기지정(지정일 : 2016. 5. 1)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관내 금연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舎)와 운동

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실내 공중이용시설 등)**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청사	22	어린이 놀이시설	201	관광숙박업소	11	공동주택	1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1	학원	175	체육시설 (대형,실내)	355	음식점	4,215
의료기관, 보건소 등	369	교통관련시설 및 어린이 운송승합차	41	사회복지시설	107	흡연카페 (식품자판기영업소)	0
어린이집	109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	437	목욕장	1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0m	51
청소년 활동시설	3	공연장	1	게임제공업소	121	어린이집 30m	109
도서관	16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5	만화대여업소	2	합 계	6,444

○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실외 공공장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공 원	60	거 리 (통학로, 지하철역 주변 등)	14	전통시장	2
학교 주변 (유치원 포함)	51	지하철 출입구 10m	10	마을마당	5
버스정류소 주변 (중앙·가로)	148	광 장	4		
택시 승차대	1	주유소, 충전소	11	합 계	306